안성초등학교 생활규정(안)

[시행 2021.3.1.] [안성초등학교, 2021.2.0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안성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안성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존중·배려·신뢰의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거)

이 규정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안성초등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조례」에 따라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교육환경 개선)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태도)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사의 교육적 권한을 존중하고,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③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④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

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⑥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⑦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⑧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⑨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⑩ 학생은 카드, 화투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등의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⑪ 학생은 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일과(하교 종례 이전) 중에 교문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①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다.

②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킨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는다.
3.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담임교사, 생활담당교사, 기타 교직원 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다.

제8조(용모)

① 복장과 두발은 자유롭게 하되 단정하게 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③ 체육수업시간에는 활동하기에 편한 옷과 신발을 착용한다.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9조(시설이용 등)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학교·학급의 시설 및 시설물에 낙서를 하지 않으며, 실내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⑤ 화장실 사용 시 질서를 지키고, 위생과 청결에 유의한다.

⑥ 급식실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청결을 유지한다.

⑦ 특별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제10조(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수업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을 지킨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수업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무단으로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꺼내 놓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휴식시간(점심식사 시간 포함)을 활용한다.

1. 휴식시간에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휴식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4.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또는 보드를 타지 않는다.
5. 휴식시간에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3조(폭력 등에 대한 대처)

①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알게 된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담임교사, 생활담당교사, 기타 교직원 등에게 알리고 보호받는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큰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일체
9.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등

② 학생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며, 되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제15조(허가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교사의 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개인적으로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방과 후나 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생활수칙)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킨다.

1.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2. 학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하거나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허락을 얻는다.
3. 교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때 지도교사가 있을 경우 그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한다.
4.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가지고 있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6. 유해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3절 정보 통신

제17조(정보통신 윤리)

학생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성희롱·비방 등을 하지 않는 등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3.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 사이트 접속하지 않고,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받아들이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4.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5.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6.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8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급 및 학년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에 의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자기기를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과정 중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 할 수 있다.

⑥ 모든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제19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지도위원회 소집 요구
6. 지도위원회에 의견 제출

제2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특별과제 부여 및 방과후 지도
4. 시설·물품의 훼손이나 오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청소 명령
5. 학부모 상담 및 교육활동 참관 요청
6. 교실 밖 특정 공간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수행
7. 교장·교감 면담 요청
8.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②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학생의 문제 행동 및 태도에 대해 학생과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④ 교사는 제1항의 교육적 조치를 일관성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학급 및 학년에서 협의할 수 있다.

⑤ 지속적인 문제행위로 더 이상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사는 보조교사 지원을 받아 교실 밖 특별공간에서 문제 행위 학생을 교육 및 상담할 수 있다. (보조교사 우선순위 1. 교과전담교사 2. 학년군교사 3. 교감)

제21조(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지도한다.

제22조(보호자의 책무)

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에게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린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3조(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교감과 교무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24조(역할)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5조(범위)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제26조(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7조(의견 제출)

교사는 학생의 교내·외 생활과 관련하여 간사를 통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정족 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용어)

① 학생회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등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학생조직을 말한다.

② 학생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서 학교교육활동과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명칭) 본회는 '안성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고 한다.

제31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2조(의무 및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대표 구성
4.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및 제안
5.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33조(임원의 구성)

① 회장, 부회장 및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부회장은 5학년과 6학년 각 1명씩으로 한다.

③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34조(학생회 규정 및 운영 세부 계획 수립)

① 본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학생회 규정 및 연간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 항의 계획에는 임원 선출 및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학년초 업무 담당교사를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한다.

제35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36조(포상)

① 학교장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표창(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징계의 원칙)

학생 징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존중과 교육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징계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한다.
3.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 대상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그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9조(징계의 방법)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생활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

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0조(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학교장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심의 결과를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41조(재심 요구)

①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위원회의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 결정 통보와 함께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경우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징계의 경감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징계 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또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3조(사후 조치)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44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안성초등학교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
2. 재직 교원의 과반수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
3. 학부모 대표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생활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한다.

③ 단, 제1항제5호에 따른 발의 시기는 예외로 하며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46조(의견 수렴)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7조(심의 절차)

① 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안내 및 연수)

① 개정된 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② 개정된 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